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비교

현 행	개 정 안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5. 단위당 절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55원 → 1,950원)	5.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설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1호에는 수도·하수도·전기·가스·송유·송열·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절용물을 포함한다.	6. 위 표의 제2호의 절용물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淨化槽 業務實態에 關한
行政事務調查結果報告書(案)

調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調査期間

1996.9.13(금) — 1996.10.31(목) [49일간]

調査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시민국 청소과)
○ 해당 관련업체(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調査實施 經過

가. 調査班 編成

구 분	조사위원	대상기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위원장 이인구	마포구청(청소과)	행정사무	김건재
조사특별 위원회	간사 유동근 위원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해당관련업체(정일정화조, 마포환경)	조사특별 위원회실	전문위원 임민상 이준범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 調査日程 및 場所

일자	조사대상부서	조사장소	조사방법	위원회
96.9.13 ～ 96.9.15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위원장, 간사 선임 조사관계 자료수합 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	1차 특위
96.9.16			조사계획서 제40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96.9.17 ～ 96.9.29			조사계획 통보 조사관계 자료수합, 정보 수집활동	
96.9.3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 이송	2차 특위
96.10.1 ～ 96.10.6			조사관계 자료수합, 정보수집활동, 증빙자료 정밀 검토 및 문제점 파악	
96.10.7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증인선서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총괄 업 무현황 보고 정화조업무 개별질의	3차 특위 주민참여 안 내문 게첨
96.10.8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정화조 업무에 대한 개별질의, 제 출서류 보완요구	4차 특위
96.10.14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현장확인	정화조 업무 개별질의 현장확인 및 수질검사 (경성고, 동교초등, 민원신고—고향 소고기국밥)	5차 특위
96.10.15	정일정화조 마포환경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현장확인	정화조 대행업소 운영실태 차고지 현장확인 (정일정화조, 마포환경 사무실 및 청소차고)	6차 특위
96.10.16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현장확인	정화조 업무 개별질의 현장확인 및 수질검사 (망원제1,2노인정, 광성중고, 숭문고, 창덕교회)	7차 특위
96.10.18	정일정화조 마포환경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정화조 회사에 대한 개별질의, (양 회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각오) 정화조 업무에 대한 질의	8차 특위
96.10.21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현장확인 (아현1동)	정화조 업무에 대한 질의 아현1동 노인병원 및 고지대 정화 조 실태 현장확인	9차 특위
96.10.22	마포구청 (청소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정화조 업무에 대한 개별질의	10차 특위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한 부조리 방지 등 대민서비스 향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 1월이후 '96년 6월까지 총 10회(분기별 1회)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중 6회(각회 여론조사대상인원 100명)는 3~10명이 응답(회신용 봉투 동봉)하였고, 4회는 응답자가 전혀 없었음.
10회중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한 횟수는 1회('94년도 3/4분기) 뿐이며 나머지 9회는 여론조사설문 결과를 분석한 사실조차 없어 본 여론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분뇨와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기와 같은 과거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반복한다는 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청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과 1일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인 정화조의 관리카드를 확인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사항,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상태(BOD) 및 '91년도 이후 청소상황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처리대상 2000인 미만의 정화조관리카드도 기재사항이 부실하여 본 관리카드로는 정화조 운영상태의 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96.12.31 까지 누락된 청소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화조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된 카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리 할 것.
-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화조관리카드나 관리대장에 누락 된 건물이 있어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

은 건물이 많았고,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4조에 의한 청소안내서나 촉구서를 발송하지 않아 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상당히 적발되었음.

정화조 내부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무위반자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자료 중 "96분뇨 및 정화조 관련 기본계획"은 제출되었으나 '92~'95년도 분뇨처리기본계획은 서류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당초부터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의 적기 실시 및 각 업소별 방류수 오염도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효율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청소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의 작성과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94년도 부과 34건 중 미징수 25건, '95년도 부과 107건 중 미징수 77건, '96년도 부과 225건 중 미징수 181건으로 체납건수는 총283건 5660만원임.

법 제1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체납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소한 실적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를 발송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등,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는 심히 비난받아야 마땅함.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한 만큼,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의 철저한 관리 및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후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은 바,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람.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94년도에는 대상 115개소중 91개소를 검사하여 13건이 기준초과하였고, '95년도에는 대상 231개소중 198개소를 검사하여 58건이 기준초과하였으며,

'96년도에는 대상 298개소중 271개소를 검사하여 72건이 기준초과하였음.

정화조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시설의 정상유지와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유지시켜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94년도와 '95년도에 57개소를 검사하지 못하였고, '95년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수중 10건과 '96년도 18건에 대하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방류수 수질검사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우리구 24개동사무소의 정화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망원1동은 '94·'95년도에 청소한 실적이 없고, 창전동은 '94년도에 청소를 하지 않았으며, '96년도에도 내부청소일이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음.

공덕1동 외 10개동은 '94년도나 '95년도중 1회를 청소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정화조의 청소를 규정된 기일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화조 관리카드의 기재사항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음.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을 계도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조치할 것.

○ 마포구 아현1동 96-2 소재한 경로의원('95.10.12 까지 아현1동 사무소로 사용함)에 대한 정화조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건물 뒷편 상단에 정화조로 판단하기 어려운 원형의 분뇨통이 설치(대행업체 직원 확인)되어 있었고, 이를 통과한 오수가 곧바로 하수도로 연결되었으며, 동일 건물내에 있는 동현파출소에서 사용중인 화장실도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이곳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곧바로 하수도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됨.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액상폐기물 정화조 관리 카드의 내용을 보면 '87년, '89년, '90년, '92년, '93년, '95년 및 '96년에는 정화조를 청소한 사실이 없고,

정화조의 시공업자나 정화조의 각 구조, 장치용량 및 능력, 처리방식 등 주요기재 사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경로의원은 환자들이 출입하면서 각종 적출물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건물임.

동 건물의 정화조시설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정화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마포구 망원2동 451-1에 소재한 건물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유자시설 9면적 270m²)로서, 구립 망원제2노인정과 특수도서실로 이용하고 있음.

본 시설물에 대한 정화조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화조가 매설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 카드도 찾을 수가 없었음.

동 시설의 배수계통도나 정화조 설계도서 등 관계자료가 전혀 없어 당초부터 정화조 시공이 되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가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됨.

법 제14조 중 관계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이 단속해야 할 집행부서의 시설물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다는 것은 스스로 행정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동 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마포구 신수동 소재 광성중고등학교 외 8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정화시설에 대한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 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배수계통도 등을 조사하고,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음. 수질검사결과, 총 9개소중 6개소가 기준이내로 적합하였고, 경성중고교(BOD 제거율 44.8%) 외 2개소가 기준초과 하였는바, 기준초과한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할 것.

경성중고교 남고건물에 위치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방류조의 여과장치 및 배수관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밀조사 후 문제가 있을 시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마포구 신공덕동 111-270에 위치한 창덕교회(대표 김성칠) 정화조시설에 대하여는 95년과 96년에 정화조 내부청소를 한 실적이 없으므로 공무원 입회하에 청소를 실시한 후 정화조 기능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96.11.24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 “96분뇨 및 정화조 관련 기본계획” 자료의 주거형태를 보면 68,287등으로 산출내역이 자치구 기본자료와 맞지 않고, 분뇨 및 정화조 통계현황이 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됨.

본 자료는 우리구의 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관리운영 및 실태파악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

‘96.12.31.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가옥대장 등을 참고로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형태별 분뇨와 정화조의 정확한 통계를 재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

마포구 신수동 106-8(가옥주: 이완배), 신수동 106-11(가옥주: 강옥자) 및 신수동 106-10(가옥주: 강대호)에 대한 정화조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106-8에 위치한 가옥은 정화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기타 2개소는 건물앞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시멘트를 발라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

3개소 모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관리카드목록에도 없었고, 정화조 내부청소한 실적이 없어 당해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법 제14조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한 후 고발 및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적발 가옥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무작위 선택하여 일부지역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이외에 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오수의 무단 방류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시,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검사를 해왔다는 사실은 대행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음.

이와 같은 행위는 정화조등 방류수의 시료채취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민간업체에 대한 부당한 협조요구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결국 우리 구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고 볼 때,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고,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96년도 마포구 청소사업비 예산에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인쇄비용으로 810,000원(’95년도 예산 518,400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없이 연례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동 업무를 맡겨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아니할 수 없음.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람.

○ 청소과에서는 관례적으로 대행업체 소속 여직원을 사무실에 상근하도록 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에 월별 청소자명단을 기록하거나 정화조관리카드를 정리하는 등 사무보조를 시켜왔음.

그러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민간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청소과의 각종 대장을 정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청소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임.

각종 보안서류등 공문서의 유출우려와 대장정리의 착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관계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즉시 시정조치할 것.

○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은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96.9.1. 사업을 시작한 마포환경산업(주)의 사무실과 차고지를 확인한 바, 대행계약의 기준에 명시된 종사원 목록시설로 사무실 옆 베란다에 샤워기 1대를 걸어 놓았으나, 온수시설과 각종 비품이 부실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고지에서 원거리에 있어 도저히 목록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이 사실을 타당한 목록시설로 복명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우려를 금 할 수 없음.

정일정화조공업(주)의 차고지에 있는 샤워시설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낡은 컨테이너 박스내 상단에 있는 온수·냉수기의 물이 흔수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비누, 수건, 슬리퍼 등 비품과 시설이 매우 열악하였음.

차고지에 있는 목록시설은 종사원의 철저한 위행관리뿐만 아니라 작업중 주민에 대한 불쾌감 방지를 위해서도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함.

대행업체의 목록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재점검한 후 시설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일정화조공업(주)은 “당사보유증인 복사기 1대로는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서류제출을 지연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여 조사활동에 차질을 준 바 있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그 정화시설이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96.8.27. 마포구 노고산동 54-56에 위치한 건물(대표 조광현)의 1건만을 용량미달로 신고를 그간의 실적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공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수익사업에만 전념해 왔다고 볼 수 있음.

청소업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부적격 정화시설에 대한 신고를 철저하게 해 준다면 정화조 관리운영에 상당한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종업원의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량정화시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분뇨수거와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청소원의 잘못된 근무자세로 인하여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청소수수료를 현장에서 간이계산서로 영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청소원의 철저한 직무교육과 요금징수체계를 개선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의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정일정화조공업(주)은 작업일자에 대하여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지연해 오다 정화조청소작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소작업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법 44조의 규정에 의해 분뇨관련영업자는 분뇨와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분뇨관리대장(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양식)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일정화조공업(주)와 마포환경산업(주)은 등 관리대장을 전혀 기록하거나 보존한 바 없음.
-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청소행정 담당자의 업무숙지도와 현장확인의 부족 그리고 찾은 인사이동('91년 이후 청소과장 평균 재임일수: 10개월, 위생설비계장 12개월)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종인(공무원)들이 정화조 실태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서면답변시 제출된 자료도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음.
- 특히, 구소유 건물에 대한 정화조 관리가 주요 행정업무에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구청장은 마포구 아현1동 소재 경로의원과 망원2동 구립 제2노인정에 대한 정화조관리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고, 시설개선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할 시 분뇨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강구하기 랍.
-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미흡과 정화조 내부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사후조치 소홀등 정화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 정일 정화조 공업(주)은 서울7다8428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차량탈취액을 '96.7.22. 2.9ℓ를 투입(8월2일 · 8월12일 · 8월22일 동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대장관리가 부실하였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일지와 법 제44조에 의한 분뇨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7려6293트럭의 최대적재량이 4,500KG임에도 차량을 불법 개조한 후 6,000KG 이상을 적재 (서울7누4306 트럭도 해당됨)하여 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음.

과징금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행업체(2개업체 해당)의 종사원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조치하기 바람.

健 議 事 項

-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94.4.1. 이후 허가되어 준공된 신축건물의 31인용 이상인 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 14건중 13건에 대하여 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음.
- 오염도검사 대상인 31인용 이상은 공동주택이 많으나 그 기간동안 입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준공검사필증은 교부받은 날부터 90일(동절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규정은 정화조의 미생물 숙성기간이 3개월로 충분한지 시험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 규격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화조의 불합격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바,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규정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전의할 것.
- 법 제3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분뇨수집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는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음.
- 그동안 정일정화조공업(주)에서 독점체제로 운영해 왔으나, 분뇨 및 정화조청소와 관련한 민원증가와 청소행정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96.9.1. 마포환경산업(주)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하면서부터 청소구역을 갑·을지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됨.
- 그러나 이에 따른 기존업체의 불만표출로 업체와 집행부서간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여 탄원서가 나오는등 갈등이 야기되었고, 한편에서는 청소구역 지정에 따른 주

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청소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전지역을 대상으로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 관계로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간 경쟁체제 방식을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우리구의 운영체제를 주민복리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것.

○ 정화조설치에 대한 준공검사시 건축법 제23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건축사가 작성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조서”에 정화조의 확인란이 없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와 설치확인서만 첨부(설계도면은 요구시만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현장점검 규정 미비함.

‘93.1월 이전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시 정화조에 분뇨·오수의 유입 및 내용물 충진등으로 정화조의 내부구조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준공전에 중간검사를 하였으나 건축허가 및 준공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중간검사를 폐지한 바 있음.

종전에는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제반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96.1.1. 이후에는 서울시의 건축행정 간소화 지침에 따라 감리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음.

정화조의 준공검사시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조서에 정화조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현장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

其他事項

○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분뇨와 정화조청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별로 안내문을 게시한 결과, 총9건의 민원인 의견 제시가 있었음.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다요금 2건, 청소 기피 1건, 무단방류 1건, 시설개선 1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남.

특히, 마포구 아현2동 68-9에 거주하는 홍태순씨는 공무수행에 맙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한 청소파 소속 최영식 직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여 미담사례가 접수 되기도 하였음.

이번 안내문 게시에 따른 민원인 의견중 2건은 의회 자체처리하고 7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사검토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處理意見

○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6.12.31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122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計劃(案)

제안일자 : 1996. 11.

제안자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1996.11.26 ~1996.12.2)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0명)으로 한다.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36조